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58340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명

담당변호사 최익새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윤상, 전용희

변론 종결 2019. 8. 22.

판결 선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33,660원 및 그 중 69,590,475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7. 7. 10. 원고 보조참가인과 E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G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7. 7. 22.부터 2022. 7. 21.까지, 보증내용을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으로 한 2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피고가 피보험자와의 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경우 피고는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18. 4. 5.경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건물주의 요구에 의하여 2018. 4. 15.까지 인도하기로 하여 더 이상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나, 인근비슷한 입지의 상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조건이 맞는다면 원고 보조참가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2)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8. 4. 11. 피고에게, 2018. 2. 27. 사실 인지 후 3월 중수차례, 4월 4일,

4월 9일 피고와 G점에서 만나 폐점 및 이전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폐점시 발생 비용에 대하여 문서로 사전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 보조참가인도 피고와의 합의를 통해 이전을 통한 가맹계약을 원하고 있고, 피고가 요청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가맹계약 제54조, 제57조, 제10장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가맹계약 중 해지와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다.

4) 피고는 2018. 4. 11. 원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2018. 4. 16.자로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해지에 따른 채권 채무의 정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피고는 2018. 3. 정산보고서상 상호계산계정상의 잔액이 4,474,427원임을 인정하고 가맹계약을 기준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이 계약해지일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가맹계약 제63조의 수속에 따라 최종상호계산계정정산서를 작성하여 채권, 채무를 확정하기로 하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피고의 채무는 아래각호와 같다.

1. 계약해지일 상호계산계정상의 잔액

1. 종료수속비(부가가치세 포함) : 550,000원

1. 손해배상금: 11,454,517원(해지일이 속한 월의 전월 정산보고서에 따라 변동 가능함)

1. 시설인테리어 잔존가: 29,884,213원

1. 폐기집기 잔존가: 2,244,158원

1. 집기철거 · 수리보수비 등(부가가치세 별도): 1,424,000원

1. 집기 손 · 망실 비용 등: 실사 후 책정

1. 장려금 반환금: 42,880,613원

○ 원고 보조참가인이 최종정산서를 통지하고 통지 후 7일 이내에 피고가 문서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동 정산서는 확정되는 것으로 하되, 매월 확정되는 기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통한 이의는 불가기로 합니다.

5)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8.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에 따른 최종정산금액이 69,590,475원임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최종정산금은 피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상호계산계정표에 따라 계산되었는데, 물품 발주에 따른 계산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종료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550,000원, 시설인테리어 변상금 29,884,231원, 폐집기 변상금 2,244,158원, 집기철거비 및 부가가치세 1,566,400원, 일시장려금 잔액 회수금 42,880,613원, 위약금 11,457,517원이다.

6) 피고는 위 정산금액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8.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폐점 후 최종정산 합의 거부에 따른 보험 청구'를 보험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8. 31. 42,880,613원, 26,709,862원, 합계 69,590,475원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과의 가맹계약해지합의시 약정한 채무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고, 보험자인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가맹계약해지합의서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가맹계약해지합의서에 작성된 채무 내역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가맹점을 이전해 주었다면 손해배상금이 나 시설인테리어변상금, 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원고보조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가맹계약해지합의서의 채무 내역 중 손해배상금 및 장려금 반환금, 시설인테리어 변상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인도하게 되어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제51조에서 정한 당연해지 사유인 '점포가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경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가맹계약해지합의서는 피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그 채무 내역을 확정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로서 피고가 스스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맹계약해지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가맹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맹계약 제54조의 중도해지 절차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18. 4.16.경 원고 보조참가인과 협의 끝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상 중도해지시 피고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 손해배상금을 1/2로 감액하고, 시설인테리어 변상금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여러차례 협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맹계약에서 중도해지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1/2로 감액한 점, 건물인도로 인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피고 측의 사정에 의한 것인 점(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재개발로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특약을 한 사실이 있고, 2017.7. 21.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임대차기간 중 매매되어 건물을 명도할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4,500만 원,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어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 안에 매매되거나 재건축되어 명도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감안하면 가맹계약약합의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시설인테리어 변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체결한 장려금에 관한 특약에서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개점시 장려금을 지급받되 이 사건 가맹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장려금 × 본 계약의 잔여일수 ÷ 본 계약의 총 기간 일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데, 장려금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금원으로 장려금 반환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51조 제1항은 "이 사건가맹계약은 점포 소재 토지가 공익사업 및 정비사업 등에 포함되어 점포가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E점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당연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 건물이 제3자에게 매도되고 그 이후 재건축이 진행되었다는 사정은 법령에 의하여 인도의무가 발생하는 수용절차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9,590,475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부터 2018. 9. 30.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43,185원의 합계 69,933,660원(= 69,590,475원 + 343,185원) 및 그 중 69,540,475원에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10. 1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

별지

제 51 조 (계약의 달면 해지)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면 해지됩니다.

1. 관계 법령의 제·개정, 행정기관의 제도변경 등에 의한 사유로 []경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본건점포 소재 토지가 공익사업 및 정비사업 등에 포함되어 본건점포가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경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①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폐점일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사업실행자 통과와 영업손실보상 합의·합의 등은 가맹본부에게 위임하거나 가맹본부의 동의하에 행하기로 하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에 관해서는 가맹수수료배분에 따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에게 수취할 권한이 있고, 시설·인테리어 및 영업물품권(미권)에 대한 보상금에 관해서는 권역 그 소유권자에게 수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③ 제①항 제3호의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것(계약종료에 따라 확정된 채권·채무 및 그 외의 독립의 채권·채무는 제외)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권역기간 및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제 52 조 (합의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문서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본건점포에 제해 발생 시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일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복구하지 않은 경우.
2. 기타의 사유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해지에 합의한 경우.

② 본건점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임차권이 종료되어 사실상 그 경유가 불가능상태에 이른 경우, 또는 이 를 것이 명확하다는 증명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제출하여 가맹본부가 이를 인정한 경우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문서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55조에 따른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권의 갱신을 포기한 경우. 다만, 임차권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포기외사를 문서로 가맹본부에게 통보하고 가맹 본부에 갱신포기를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제64조에서 정하는 임대차계약서 제[]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시건에 문서로 가맹본부의 []배지 및 그 해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단축하여 변경하거나 갱신하여 임차권이 당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보다 일찍 종료된 경우.
5.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기망 또는 사위의 []임대차계약서 제[]항을 위반한 경우

제 54 조 (종도해지)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후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종도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지일로부터 90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기회이익을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경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1. 가맹본부가 해지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구분	산식
해지일이 개점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일 때	가맹금액(표1) × 6
해지일이 개점일로부터 36개월 경과한 때	가맹금액(표1) × 4
해지일이 개점일로부터 48개월 경과한 때	가맹금액(표1) × 2
당업일수가 12개월에 도달한 경우	가맹금액(표2) × 해당기간의 당업일수 ÷ 365 ÷ 12 × 6

표1: 해지일이 속한 월의 전월부터 12개월간(가맹본부의 통제한 당업일수가 7일 이상 발생한 월을 제외한 12개월간으로 합니다.)의 월평균 매출이익에서 월평균 가맹수수료를 뺀 금액.

표2: 개점일부터 해지일이 속한 월의 전월까지의 전체 매출이익에서 전체 가맹수수료를 뺀 금액.